

EHS

Environmental Legal Updates

2021년 가을

기사 목록:

-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 안내
- 행정심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재결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공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 8. 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시나리오 초안은, 2020. 10. 이루어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i)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료·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ii) 1안을 기초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iii)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전환), 전기수소차비율(수송), 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톤, (2안) 18.7백만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각 대안별 예상 순배출량]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순배출량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탈루
1안	25.4	46.2	53.1	11.2 (-9.4)	7.1	17.1	4.4	-24.1	-95	13.6	1.2
2안	18.7	31.2	53.1	11.2 (-9.4)	7.1	15.4	4.4	-24.1	-85	13.6	1.2
3안	0	0	53.1	2.8	6.2	15.4	4.4	-24.7	-57.9	0	0.7

- **전환 부문**의 경우, 석탄 발전 또는 LNG 발전을 어느 정도 가동할 것인지에 따라, 1안(석탄발전 최소화), 2안(석탄발전 중단), 3안(석탄/LNG발전 중단)으로 나누어지고, 석탄발전 및 LNG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감축 방향입니다.
- **산업 부문**의 경우, 주요 감축수단으로 철강업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100% 도입하여 코크스 생산용 유연탄을 수소로 대체하고, 기존 고로는 모두 전기로로 전환, **시멘트업**의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을 가정하였습니다.
- **수송 부문**의 경우, 주요 감축수단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1안 및 2안의 경우

전기·수소차를 76% 이상 보급, 3안의 경우 전기차를 80% 이상, 수소차 등 17% 보급을 가정하였습니다. **해운**의 경우 전체 해운에너지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연료 및 LNG 연료 확대, 40%는 전기·수소선박 보급, 선박에너지효율·운항효율 개선 방안을, 항공의 경우 전체 항공유 소비량 중 30%는 바이오항공유 확대, 20%는 전기·수소항공기 도입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건물 부분**의 경우,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폐기물 부분**의 경우,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 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등을 감축수단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9월까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는 별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NDC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 안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관련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최근 미세플라스틱 규제 관련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발의되어 알려 드립니다. 본건 개정안은 2021. 7. 14.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1. 7. 28.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하여,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원료 또는 첨가제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제 내용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고(법 제9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별표 1]에서는 세정제, 섬유유연제, 살균제 등 39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등 8개 품목 제외한 나머지 31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10조제1항),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제품정보,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 본건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직경 5mm 이하인 고체 플라스틱’으로 정의하면서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추후 규정될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기준을 준수하여 위의 확인 및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8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0조제6항).

- 본건 개정안에서는 위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을 추가하였는바, 법 시행 이후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2. 살생물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 살생물제품(살균제, 구제제, 보존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20조제1항), 동조 제2항에서는 제품승인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건 개정안에서는 제품승인의 기준으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을 신설하였는바, 추후 개정될 시행규칙과 위 고시에서 구체적인 수치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재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취소 재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행정심판에서의 청구 인용 선례가 많지 않았음에도, 본건에서는 청구인이 취소 재결을 받음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 절차를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면서, '후속공정 증설'을 사유로 할당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해당 공정에 대한 증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설 부분에 대한 할당량을 제외하여 할당량을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증설'이 완료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할당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해당 공정의 증설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환경부는 처음 할당 신청 당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할당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행정심판에서 환경부(피청구인)는, 청구인 스스로 '해당 공정 자체의 증설'이 아닌 '후속공정 증설'을 사유로 할당을 신청하였고 증설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할당량 통보는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적법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정의 증설' 사실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초 할당신청과 별개인 새로운 할당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i) 청구인이 처음 할당 신청 당시 증설 여부를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제도의 취지 및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까지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ii) 청구인은 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전제로 할당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그 원인을 자체 증설로 정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별개의 새로운 할당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구술심리를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팀의 전략적인 검토 하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분야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청구인 입장에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고 정당한 할당량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라 할 것입니다.